

제8차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 인증제도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조 미 영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개 요

제8차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이하 CCFICS라 칭함)는 43개국 대표와 15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총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1일~25일 아드레이드 컨벤션센터에서 AQIS 국제정책과 (Policy and International Division) 과장인 Mr Digby Gascoine 주재아래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수입식품 관리제도, 품질보증제도, 동등성판정, 증명서 등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야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표 1 참조). 주요 의제마다 열띤 토의가 벌어졌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수입식품 관리제도, 품질보증제도, 동등성판정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우리나라, EU, 프랑스, 모로코,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이 여러 문제제기를 하여 인증서 지침을 제외하고는 단계 진행이 유보되고 의제별로 새로운 작업방향이 제기되었다(회의결과 요약은 부록 1 참조). 의제별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8차 CCFICS 회의 의제

의제 1	의제 채택	CX/FICS 00/1
의제 2	총회와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CX/FICS 00/2
의제 3	수입식품관리제도(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3 CX/FICS 00/3-Add.1
의제 4	공식증명서서식지침기준 및 증명서작성발급규정(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4 CX/FICS 00/4-Add.1
의제 5	품질보증제도 활용증진지침서(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5 CX/FICS 00/5-Add.1
의제 6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제안서	CX/FICS 00/6
의제 7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기술규정 동등성판정제안서	CX/FICS 00/7
의제 8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의제 9	차기 회의날짜 및 장소	
의제 10	보고서 채택	

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1. 총회와 CODEX 타분과위원회 논의 보고 (의제 2)

Codex 사무국 Mr. David Byron은 23차 총회와 식품위생분과위원회 합의된 사항을 소개하고 일반원칙분과위원회 관련 사항과 FAO/WHO/WTO 2000년도 국제식품무역 회의결과, 동등성 관련 전문가협의회 등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였고 WHO 대표는 105차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2000. 1.)에서 식품안전사업과 Codex 작업 참여를 확대하자는 요청을 WHO 총회에 할 예정으로 2000. 5월에 개최되는 53차 WHO 총회에서 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2.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권고사항 (초안)(의제 3)

동의제는 우리나라, EU,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아르헨티나등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의견을 CRD로 제출하였고 이를 동안 논의될 정도로 회원국의 관심도가 컸던 사항이었다. 회의도중 제4조 수입식품 관리제도 요소(특히 목표와 우선순위 및 법령구조) 부분에 대하여 임시작업반을 조직하여 재기안 하는 등 6단계로 진척시키려는 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조항별, 특히 제4조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3단계로 유보하였다.

동문서는 지난 7차 회의('99. 2)에서 멕시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와 미국 등 9개 국가가 기안한 것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조항별 검토로 진행되었고 세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문서의 지위를 지침서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동지침서의 정의논의시 캐나다가 MOU, MRA 용어사용은 동지침서 사용을 예단하고 그 범위를 제한시키므로 삭제제안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이외에도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인증(certification)은 삭제되고 허가(Licensing), 실험실인정(Laboratory Accreditation) 및 품질제도(Quality system) 용어가 추가되었다.

수입식품관리제도요소의 4.1조 '목표 및 우선순위'와 4.2조 '법률구조부분'에서 회원국간 동조항 범위에 대해 이견이 많아 회의중간에 기안작업반을 형성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4.3 '법령과 규격'조항에서는 수입식품 규격이 국내규격보다 보다 엄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구조정이 있었고 4.5 '행정규정' 조항에서는 관련 규정입수 문제 등이 추가되었다.

'제5조 관리제도요소운영' 논의시 위해 분석은 타조항에 기히 포함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검사시 이행이력적용'시식품안전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고 롯트별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수정하였다. '수입식품 관리시점'은 제품생산으로부터 판매시점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말레이시아는 '수출국의 수출식품관리인정' 조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수출국의 관리요소인데 수입식품 관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MOU와 MRA 정의가 삭제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인지를 이의제기하였는데 미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 가운데 존치하기로 하였다. 5.5 자료교환조항에서는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CODEX 지침서'가 교환되어야 할 자료성격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역국의 관할당국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자료목록을 정리하고 추가하였다.

수입식품관리제도운영에 관한 38항을 적합이력이 없거나 적합이력이 낮은 제품의 검사는 강도를 높게 설정하여야 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특히 적합이력이 낮은 공급업자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절차에 명확히 하였다. 증명서 사용여부는 양자협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자는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41, 42, 43항은 삭제되었고 49항의 경우 부정당한 임의검사절차 또는 부적합결정에 대한 청원제도가 보장되도록 수정하였다.

지침서(초안)에 대한 이틀간의 열띤 토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이견이 많아 5단계로 상정되지 못하고 3단계로 유보되었다. 추후 사무국에서 동초안을 일차적으로 재작성하고 그 초안을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멕시코, 모로코, 영국, 미국등 9

개국가 기안그룹에서 검토하여 향후 3단계로 공람후 제9차 회의(2000. 12)시 재논의될 예정이다.

3. 증명서 서식기준지침 및 증명서 발급규정(초안)(의제 4)

동의제는 제7차 CCFICS에서 호주와 영국의 제안을 따라 작성된 문서로서 몇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5단계로 47차 집행이사회(2000. 6)에 상정되었다. 동의제에 대해 캐나다, 인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이 CRD를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조항별 검토로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동문서의 제목을 'Guidelines for Generic Official Certificate Formats and the Produc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로 정정하였다. 서언에는 프랑스가 제삼자기관이 인증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이의를 제기하여 상업관계자(Commercial parties)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증명서의 목적을 EU의 제안대로 검역(quarantine)은 CODEX 업무분장이 아니라는 의견하에 삭제하여 식품안전에 한정하기로 하였으나 증명서상에 동식물 health status 내용을 관행상 요구하므로 수입국의 요구시 발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다. '원칙' 조항에서 증명서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공정한 관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는 것으로 하였고 인증서계획 또는 사용항목중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증명서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토론을 거쳐 공인 인증서 용어 정의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유보한 채 정부증명서외에도 공인증명서사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준서식에서 원본복사본(original copy)과 중복복사본(duplicate copy)이 명백히 규정되고 전자인증서사용에 관한 조건을 향후 별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공인기관에서 발생한 증명서가 경우에 따라 추후 논의를 전제로

확인번호가 요구될 수도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정부(혹은 공식)증명서(officially certificate), 공식인쇄사본(officially printed copies), 공인증명서(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es), 공인기관(officially recognized bodies)에 관한 정의를 설정하자고 합의하였고 11항에 인증서가 허위의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화물세부사항(Detail of the consignment)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철저한 목록을 개발하기보다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분류의 최소목록을 하부조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여 일부는 삭제하고 식품의 성격, 생산시설확인, 수입국이나 발송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추가하였다. 증명서를 발행하는 당국은 지정되고 충분히 국가법령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담당자가 인증당국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추가되었다.

동분과위원회는 동지침서(초안)을 47차 집행이사회에 5단계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부록 2 참조). 호주와 영국이 주관하고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및 EC, 네덜란드가 동참하여 기안작업반을 형성하였고 추후 6단계로 의견수렴을 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사항을 47차 집행이사회에 알리기로 하였다(전자증명서 규정, 수출후 증명서 발급문제, 정부/공인기관의 관계, 신설정의).

4. 품질보증제도 활용지침서(초안) (의제 5)

7차 CCFICS에서는 23차 총회로 '품질보증제도 활용증진을 위한 지침서(초안)(Proposed Draft Codex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신설작업 승인요청하기로 한 후 23차 총회에서는 동지침서 설정을 지지하였고 작업문서를 8차 회의에 제출토록 권고하였다. 지침서초안 작성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및 미국이 동참하였다.

동사안은 EU,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등이 지지발언을 하였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반대의견, 인도, 이집트, 모로코, 스웨덴, 싱가폴등은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의사가 반영되어 HACCP와 품질제도와의 조화와 품질보증제도를 정부관리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등 작업방향에 대한 일반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품질보증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의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침서의 지속적인 개발에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가 있었고 일부 대표단은 품질관련 기타 규정으로 주관적이며 잠정적으로 무역시 비관세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에 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품질보증제도는 비안전조치(non-safety measures)로서 자발적인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품질보증제도이용을 위한 자원, 기반구조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타대표단은 품질보증제도의 이용에는 안전성과 품질요소가 명행해야 한다는 점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현재 문서가 보다 HACCP와 ISO 9000계열 품질보증제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수제조규범과 Codex 식품위생 일반원칙이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품질보증제도가 정부관리책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몇몇 대표단은 동지침서가 자율품질보증제도가 공식관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제목을 안전성 및 식품 품질의 모든 측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품질보증제도의 활용증진지침서(*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to meet Requirement in Relation to Food*)”로 하기로 하고 HACCP 원칙을 품질보증제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차이로 인하여 범위조항중 2항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또한 ISO에서 설정한 정의와 총회결정을 고려하여 정의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품질보증제도요소(5항, 제3조)에 보정조치, 내부감사, 공급업

자평가, 소급성, 측정 및 제도검토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HACCP 원칙과 품질보증제도간에 연결을 7항에 명확히 하였고 ISO 규격이 단계마다 제품의 동일성을 제공할 뿐 회수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회수로 인한 국민에게 정보전달은 필수적이므로 동조항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분과위원회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미국과 EC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후 차기 회의전에 문서를 공람하기로 하였고 기안작업반은 일반적인 품질보증제도 활용증진 뿐만아니라 품질보증제도와 HACCP/ISO/CCFH 관계, 서면의견, 금번 회의시 토의사항을 고려하여 내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5.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 제안문서(의 제 6)

동사안은 제7차 회의에서 제안되어 46차 집행이사회('99. 6)와 23차 총회('99. 6) 승인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뉴질랜드가 호주, 캐나다, 미국과 공동으로 작성된 것으로 EC, 폐루, 브라질, 태국이 CRD로 자국의견을 제출하였다. 23차 총회('99. 6)에서 동등성협정(CAC/GL 34-1999)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동의제에 대하여 회원국은 CODEX 단계 진행도입에 지지를 나타내었고 세부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의제를 기반한 뉴질랜드대표, Mr. Hataway는 동등성 판정 요소인 식품안전 목표(Food safety objectives)에 관하여 CCGP(일반원칙분과위원회)와 CCFH(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식품안전 목표는 위생조치로서 TBT 협정사안이 아니며 CODEX 제도는 위해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규정이 아니므로 기술규정에 관한 동등성 판정과 별개 문서로 작업해야 하고 위생조치 동등성 판정 문서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캐나다도 동일입장이었다. 미국은 TBT 사안이든 SPS 사안이든 동등성 판정 단계진행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다. 영국대

표는 동등성 판정 사안은 중요한 문제로서 CODEX 분과위원회에서 SPS와 TBT 사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사안은 23차 총회에서 보고되어 진척된 것으로 동 문서가 mandatory인 점을 고려할 때 단계 진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자고 하였고 위생조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작업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영국을 지지하였다. 호주대표는 위생적 측면과 기술적 문제를 분리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두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추후 병합하기를 제안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뉴질랜드에게 캐나다, 프랑스, 일본, 모로코, 미국, EU의 도움을 받아 식품검사 및 증명제도와 관련한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9차 CCFICS 이전에 제3단계로 지침 안을 회람하여 의견수렴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47차 집행이사회에서 지침작성이 새로운 작업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해진 결정으로 동분과위원회는 CCGP와 CCFH에 동사안을 알리기로 합의하였다.

6.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기술규정 동등성지침(초안)(의제 7)

의제 6과 관련하여 위생조치와 기술규정을 병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작업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동분과위원회는 기술규정의 동등성판정에 관한 지침을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에 관한 지침과는 별도로 병행하여 개발하여 차후에 병합하는 것도 가능함을 지지하였고 또한 기술조치의 동등성보다는 제도의 동등성에 작업의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되었다.

이 사안을 고려함에 있어 동분과위원회는 대부분의 수입식품이 식품안전 이외의 사유로 인해 불합격되거나 보류된다는 사실과 WTO/SPS와 TBT협정의 동등성 개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점에서 몇몇 대표는 위생조치의 동등성 문서에 동문서를 병합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비안전-품질요소관련 위해역활로서 품질이 규정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향후 위생 또는 검사조치에 반하는 기술규정에도 동

등성의 의미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동문서는 여타 CODEX 분과위원회에서 개발된 정의와 작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CODEX 기준과 총회위임사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식품검사 및 증명제도와 관련한 기술규정의 동등성판정에 관한 지침서(초안)을 프랑스, 남아공 및 미국의 도움을 받아 호주가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7.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의제 8)

가.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위해관리지침서(초안)

동의제는 23차 총회 요청에 따라 호주가 작성한 문서로서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정보교환지침(CAC/GL 19-1995)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C 대표는 식품안전사고발생시 필요한 정보입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WHO 대표는 국제공중보건사고시 위험관리를 다루는 WHO 국제위생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의 개정안을 소개하며 차기회의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 캐나다, EC, 인도국가는 일반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작업필요성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 위해분석시 과학의 역할과 기타 요소

CODEX 사무국 대표는 제14차 CCGP에서 CODEX 의사결정기준인 과학의 역할과 기타 합법적인 요소(the legitimate factors)에 관하여 하부분과위원회로 회부한 사실을 알렸으며 EC 대표는 기타 합법적인 요소에 관하여 관리의 경제적측면, 조치의 실제사항, 조치도입능력 및 조치수행능력, 전문가의 이용가능성, 시료채취가능성, 소비자정보 및 신뢰도, 기밀유지, GMP, GAP, 종교적 고려사항이 CCFICS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스위스는 사회/문화적요소, 소비자정보를 추가로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동의제는 당분과위원회의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의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어 문제제기만 되었다.

다. 기타 사항

모로코대표는 수출식품관리제도에 관한 지침필요성을 제기하여 차기 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8. 차기 회의날짜 및 장소

제9차 회의는 2000. 12. 12~15 호주 퍼스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III. 결 언

동분과위원회는 SPS 협정과 TBT 협정 중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야 이행 조치(measure)에 관한 국제기준을 작성하는 정책적이며 기술적 성격의 분과위원회로서 금번회의부터는 동분야의 실제적인 분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동등성 협정 이행을 위한 분야별 논의가 진행되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참여와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의제중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초안)은 수입식품 관리 실행지침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관리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로서 수입식품관리제도의 목표와 법령범위(4조)와 수출식품의 관리인정(5.4조), 수입식품관리범위

논의가 핵심 논쟁이였다고 평가되며 동지침서는 현재 수입식품관리범위를 수출국의 생산관리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송까지 즉 수출국의 밭에서 수입국의 식탁까지의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증명서 서식 및 발급지침(초안)은 국가간 제도의 차이로 인한 이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으로 현재 수출용 증명서는 우리나라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향후 동지침서를 토대로 국내적으로도 식품위생법에 동사항의 법적근거 마련 및 증명서 서식설정 등 실행 기준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질보증제도지침서(초안)은 금번회의에서 EU 국가에서 HACCP에 근거한 식품안전중심의 품질기준을 강력히 대두하고 나왔으나 품질과 위생을 포괄한 새로운 품질보증제도를 작업하자는 미국과 호주의 의지가 결연하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금년 12월에 속개될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는 호주의 상당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작업진행에 대한 의장의 결연한 의지표명으로 금년내로 개최된다. 국내 수출입관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동회의에 지속적이며 일관된 정책결정자,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석아래 아국의 입장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록 1

제 8 차 CCFICS 회의 결과 요약

(제8차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의 제 명	단 계	향후 조치	참고 문헌 ALINORM 00/30
일반증명서 및 발급지침(초안)	5	47차 집행이사회 정부 기안그룹 9차 CCFICS	33-49항 부속서 II
수입식품관리제도지침서(초안)	2/3	사무국 기안그룹 정부 9차 CCFICS	8-32항
식품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품질보증제도지침서(초안)	2/3	기안그룹 정부 9차 CCFICS	50-61항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 제안서	1/2/3	47차 집행이사회 기안그룹 정부 9차 CCFICS	62-65항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기술규정 동등성판정 제안서	2/3	기안그룹 정부 9차 CCFICS	66-69항
국제간 교역시 식품안전관리사고에 관한 위해관리지침제안서	---	호주 9차 CCFICS	70-72항
수출식품관리제도 제안서	---	모로코 15차 CCGP	75항

부록 2

공식증명서 양식 및 발급지침(초안)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GENERIC OFFICIAL CERTIFICATE FORMATS AND THE PRODUC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5 단계)

서 언

1. 동지침서는 상업관계자가 식품생산 모든 단계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책임진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목 표

2. 증명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원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국 규정에서 목적하는 바에 부합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정보수준은 수입국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출국이나 수출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국민건강에 관계가 없는 이상 상업상 기밀이 되는 정보를 노출시키는 규정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증명서는 공정한 무역관행이나 제품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져야 한다.

범 위

3. 동지침서는 국가간 무역시 제시해야 하는 식품의 특성(attribute)를 증명하는 정부(official) 및 [공인증명서(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es)]의 구성(design)과 사용에 관한 것이다. 증명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완전성(Wholesomeness) 또는 무역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4. 동지침서는 CODEX에서 다루는 범주가 아닌 동·식물 전강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상업 관행상 증명서에 동사항과 관련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5. 동지침서는 증명이 서류 및 전자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 의

증명서(Certificates)란 수입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정부증명서(Official Certificates) [추후 정의 개발계획]

정부인쇄사본(Officially printed copies) [추후 정의 개발계획]

공인증명서(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es) [추후 정의 개발계획]

공인인증기관(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bodies) [추후 정의 개발계획]

규정(Requirements)이란 식품의 교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호,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무역조건유지를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원 칙

6. 증명서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수출증명서의 근거와 규정이 투명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 식품의 공정한 무역원활화와 식품안전성에 관한 규정 부합
- 인증과정의 단순화와 간소화
-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무역시 필수기재규정(compulsory trade description requirements) 총족
- 인증대상화물의 정확한 확인제공
- 허위로 작성될 우려의 최소화

기 준

표준서식

7. 증명서는 정부 또는 공인, 인증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담당기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가 사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로고 및/또는 증명서 상단부(letterhead)로부터 인증기관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정부증명서는 개개의 고유번호(문서번호)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인증담당자 및 수령기관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언어들 또는 언어로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출력된 증명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관할당국에서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증명서의 배포시 동기록과 증명서가 서로 관련될 수 있어야 한다.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경우에 따라 적절히 고유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9. 증명서원본(Original certificate)은 확인되어야 하며 인증당국은 최소한 한장을 인쇄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본은 공식적으로 복사(photocopies)나 인쇄복사(printed copies)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증명서 상태, 예를 들면 원본이나 사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

10. 증명서는 어떤 양식이라 할지라도 허위로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watermark paper 사용, 복사할 수 없는 종이사용이나 기타 보호장치)

11. 증명서가 일반양식(physical form)으로 발행되는 경우 문서의 한 장이 되도록 하거나 한쪽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두 쪽이나 그 이상의 쪽이 전체가 되도록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서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장마다 인증담당자가 서명하거나 및/또는 전체쪽중

몇쪽에 해당된다는 쪽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2/4쪽).

12. 증명서는 인증대상제품에 요구되어지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reference)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증명서는 관련 제품과 화물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4. [증명서는 해당화물이 해손되지 아니하고 확인가능하며 변경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제품이 수출된 이후에도 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란 증명서 발행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날지라도 다른 공인기관에 의한 서류발급을 말한다.] / [어떤 인증서도 화물이 관련당국의 관리영역을 벗어나면 발행될 수 없으며 단 예외적인 상황으로 화물이 수송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토대로 증명서 발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15. 증명서의 발급 또는 발송을 위해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이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의 관련당국간에 합의된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아들여져야 한다. 증명서는 요청에 따라 수입국 당국에게 문서화된 사본으로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의 검사원은 증명서의 세부 사항을 전자수단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의 세부사항

(주: 동세부사항은 식품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국가간 제품을 수송하는 선적용 BL에 해당되는 일반정보이다. 또한 정부증명서 서류에 필요한 선적 자료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16. 인증 대상 제품의 세부사항은 증명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품의 상태
- 제품명
- 양, 적정단위로 표시
- 룻트번호 또는 날짜표시
- 생산공장명
- 수입자의 성명 및 연락처(수탁인)
- 수출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의탁자)
- 선적지(국가)
-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

원산지 표시

17.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수입국이 제품의 성분에 대한 원산지에 관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에는 수출국외의 지역에서 유래된 성분의 원산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증명서(Attestations)

18. 인증서에 포함된 특정 증명사항은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것은 증명서 본문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국민건강현황
- 제품의 특정등급 또는 기타 규정의 적합성
- 수출국의 가공 및/또는 포장공장 현황(허가사항)
- 양자/다자 협정 사항

인증당국의 책임

19. 인증당국은 투명한 방법으로 증명서에 요구되는 특정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0. 당국은 동 절차를 통해 시기적절히 인증서 발행을 하며 교역상 불필요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 당국은 실제적으로 정부증명서가 혼란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증담당자의 책임

22. 증명서의 올바른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와 지침은 증명서에 포함될 세부항목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모든 담당자 및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 인증담당자는

- 인증당국에 의해 적절히 지정되어야 하며
- 증명서에 증명되어야 하는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 제품의 인증전에 제품이 충족하여야 할 기준에 대한 담당당국에서 발행할 명확한 정보나 지침책자 또는 증명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 사본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 화물과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상업관계자와도 독립적인 관계 이여야 한다.
- 담당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인증한다(또는 다른 담당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증명한다)
- 문서를 사인한 시점에서 알려진 상황과 관련해서만 인증한다.

증명서 원본 제시

24. 수입자(수탁인)는 제품을 수입국

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원본과 함께 수입국 당국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서식 작성 개요

25. 증명서는 항상 원본으로 수출자나 또는 대행업자에게 발행하여 제공해야 한다.

26. 요청이 있을 때는 증명서 사본(명백히 “사본(copy)” 또는 “duplicate”이라고 표시된 것)을 수출국과 수입국 관련당국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증명서를 사인할 때 담당자는 다음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 증명서는 증명서본문에서 요구된 삭제부분을 제외하고는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 인증된 정보의 변경은 관할당국의 공식도장을 사용하여 인증담당자가 표시(initial)하고 날인한다.

증명서는 담당자의 사인, 인증담당자의 성명과 직함(손으로 기입)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자격(qualification)을 기재한다.

- 증명서는 증명서가 사인되고 발행된 날짜를 기재하고 가능한 경우 증명서의 발행시간도 기재한다.
- 증명서는 인증담당자의 사인이후에 수정되지 않도록 공란을 남기지 않는다.

증명서 재발급(Replacement Certificates)

28. 타당하고 충분한 사유(전달과정증체순)가 있어서 인증담당자가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발행전에 “재발급”이라고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재발급한 증명서에는 원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